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2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5.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387호)

나. 회부일자: 2021. 10. 8.

다. 상정일자: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0. 15.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과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반려동물보호, 한국형 뉴딜정책, 부동산 정책 및 지적재조사, 미세먼지 저감, 감염병 대응 등 국가 정책과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공원녹지 업무 등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6급 이하의 인력 확충을 위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근거규정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자치법」 제125조¹⁾

1)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2)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안 제2조)

○ 지방공무원의 총수 : 1,515명 → 1,567명 (+5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85명 → 1,537명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관련 별표3)

○ 정원 총계 : 1,515명 → 1,567명 (+52명)

○ 일반직 계 : 1,504명 → 1,556명 (+52명)

- 6급 이하 : 1,425명 → 1,477명 (+52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주요시책과 구정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6급 이하의 직원 5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안건이 제출되었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²⁾(직급별 정원) 및 제30조(정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다만, 시·군·구의 경우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같은 규정 제22조제2항³⁾에 따라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증원되는 6급 이하의 직원 52명의 각 부서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2)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88명 증원 이후 가장 많은 실무직원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출산 등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그 동안 늘어난 업무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부 부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 수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서별·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2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5.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388호)

나. 회부일자: 2021. 10. 8.

다. 상정일자: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0. 15.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과 아동·청소년 상담사업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12.31.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성북구의회 동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 시설 현황

구분 \ 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 치	정릉로 242(정릉동 966-1)	동소문로 26다길 8-2
규 모	연면적 235.38㎡ (지상4층)	연면적 283.86㎡ (지하1층/지상3층)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수탁자 현황

수탁법인	시설명	수탁기간	종사 자수	소요예산 ('21년 기준)
국민학원 국민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2019.1.1. ~	6명	352,925 천원 (국 48,735천원, 시 67,610천원, 구 236,580천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2021.12.31.	3명	170,494 천원 (국 70,897천원, 시 70,897천원, 구 28,700천원)

3)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⁴⁾ 이내

※ 2021.5.6.(조례 제1370호)에 의거 “5년 이내 ⇒ 5년으로” 로 변경

○ 위탁사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위탁방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

- 위원회 운영기간 : 2021. 11월 ~ 안전심사 후 자동해산

4)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구성인원 : 9명 이내(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위 원 :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 위원회 기능 : 민간위탁의 타당성·필요성 및 수탁기관 심사 등
- 추진일정(예정)
- 수탁기관 모집 : 2021. 10.~ 11.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2021. 11.
 - 수탁기관 협약 체결 : 2021.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4조⁵⁾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12.31.일자로 3년 동안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2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7. 김우섭 의원 외 12명 발의(의안번호391호)

나. 회부일자: 2021. 10. 8.

다. 상정일자: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0. 15.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우섭 의원)

가. 제안이유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자이거나 치매환자, 소년·소녀 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세대에 화재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안 제1조(목적) : 성북구민을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코드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

○ 안 제2조(정의) : 가스타이머 코드⁶⁾, 사업자⁷⁾

2)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 안 제3조(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
 년·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경로당

3) 지원내용, 보조금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5조~안 제6조)

4) 검사 및 감독, 환수조치,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가스사용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현재 성동구 등 7개의
자치구가 시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하는 안전점검과 교육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 가스타이머 콕 설치비용의 지원 범위를 조정하여, 상위법 및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일관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제5조제1항 중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를 “설치비용을”로, “있으며, 지원금 이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를 “있다”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391
----------	--------

제안 연월일: 2021년 10월 15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 가스타이머 콕 설치비용의 지원 범위를 조정하여, 상위법 및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일관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제1항 중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를 “설치비용을”로, “있으며, 지원금 이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를 “있다”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를 “설치비용을”로, “있으며, 지원금이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 이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 ----- ----- 설치비용을 ----- -----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 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보조금 신청 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선정된 경우가스타이며 꼭 보급공사를 행하는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검사 및 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한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 (제4조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자		20	.	.	.
지원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택구분	☐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금속배관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주 소						
지원대상 세대유형	☐ 65세이상 독거노인·고령자 ☐ 치매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 경로당 ☐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제6조 관련)				
신 청 인	상 호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보급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 도 별	도시가스 : 세대 LPG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	총 공사비용 원 중 원			
보 조 금 사업기간	20 . . . ~ 20 . . .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교부신청 전) 1.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제2조 사업자 증빙자료 포함)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사업비 집행계획 1부. 4. 사업비(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교부 후) 1. 설치세대별 설치전후 사진 1부. 2. 설치세대별 설치확인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수 증빙자료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대상자)

(서명 또는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2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7. 양순임 의원 외 12명 발의(의안번호392호)

나. 회부일자: 2021. 10. 8.

다. 상정일자: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0. 15.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성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장려하거나 지원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제1조(목적) :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 제2조(정의) : 방연 마스크⁸⁾, 안전교육(국민안전진흥기본법 제2조⁹⁾)

8)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마스크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방연 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3조(비치장소)

관련법령	대상시설	구체적 내용
「공공기관의 소 방안전관리에 관 한 규정」 제2조	공공기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	영유아보육시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거주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예산지원,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4)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 건축·구조물의 화재통계¹⁰⁾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단위 : 천원)
		계	사망	부상	
서울시	3,790	328	39	289	12,952,010
성북구	113	54	4	50	519,470

※ 기간 : 2020. 10. 9. ~ 2021. 10. 10.

국가화재정보센터의 지난 1년 동안의 건축·구조물에서의 화재건수는 서울시 전체의 경우는 3,790건이 발생하여 3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이 중에서 39명이 사망하였으며, 성북구의 경우에는 건축·구조물에서 11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5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이 중에서 4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과 시설 등 공공의 영역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한 비치장소(적용범위)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10)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화재통계 (2020.10.9. ~ 현재까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성북구의 사무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2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7. 진선아 의원 외 11명 발의(의안번호393호)

나. 회부일자: 2021. 10. 8.

다. 상정일자: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0. 15.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진선아 의원)

가. 제안이유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여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을 물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안 제1조(목적) : 투명성 · 공정성 · 효율성 향상에 기여
- 안 제2조(정의) : 위원회 및 위원, 총괄 · 담당부서 등 용어 정의

2) 기본원칙,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3조~안 제5조)

- 안 제3조(기본원칙)
 - 행정의 전문성 · 민주성 · 투명성 · 공정성 제고에 기여토록 운영
 -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

○ 안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 기본조례로서의 성격 부여

3) 위원회의 설치요건, 사전협의, 설치내용 및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안 제9조)

○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중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등 설치
-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될 경우 통합 운영토록 규정

○ 안 제7조(사전협의)

- 위원회 신설시 절차에 따라 총괄부서에 협의

○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내용)

-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존속기한, 의사정족수 등 기본사항

○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선정인원과 기준 및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업무 영역 규정

4) 위원의 임기, 위촉,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안 제13조)

○ 안 제10조(위원의 임기)

-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예외규정 있음)

○ 안 제11조(위원의 위촉)

- 위원 위촉시 총괄부서와 중목여부 사전 협의 등

5)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사무기구, 위원회의 존속기한 및 위원 수당에 관한 규정(안 제14조~안 제18조)

○ 안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존속기한을 조례나 규칙에 명시

6)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위원회의 통합·폐지에 관한 규정(안 제19조~안 제20조)

○ 안 제20조(위원회의 통합·폐지)

- 위원회 등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필수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각종 위원회 관리에 있어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정안으로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구성한 바, 현재 소관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여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조례마다 새로이 생기는 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2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7. 정혜영 의원 외 13명 발의(의안번호394호)
나. 회부일자: 2021. 10. 8.
다. 상정일자: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0. 15.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혜영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안 제1조(목적):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안 제2조(정의)
 - 청소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보호법」 제27조제1항¹¹⁾

11)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3) 기본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예방교육, 자문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

5) 예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 안 제8조(예산의 지원)
 -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을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하는 현상이 아니라 도박중독과 같이 행위중독에 속하는 질환으로 규정하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됨에도 게임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들에 비해서 게임을 우선시하고 대인관계와 학업, 직업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높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과 이용률에 따라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고통을 받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치료 등의 도움 및 예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6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과의존 위험군은 유아동 5.0%, 청소년 13.1%, 성인 5.8%로 매년 청소년의 과의존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게임 과의존 요인별 분석결과 금단현상이 31.0%로 증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내성 25.4%, 가상세계 지향성 23.0%, 일상생활장애 22.3%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과도한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격형성에 저해를 가져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2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7. 정해숙 의원 외 12명 발의(의안번호395호)

나. 회부일자: 2021. 10. 8.

다. 상정일자: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0. 15.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해숙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Trauma)” 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와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치료사업, 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안 제2조(정의): 심리적외상(Trauma)¹²⁾,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¹³⁾,
“사회적심리 외상¹⁴⁾”

- 2) 구청장의 책무 및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3)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 4) 지원협의회의 운영(안 제6조)
- 5)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6)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7)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2016년 한국청소년 위기실태 조사¹⁵⁾에 따르면 정신건강 위험군은 총 77만명이며 전국 위기취약 청소년 9만여 명 중 서울시에 4.4%(3,990여 명, 2016년)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서울시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이 평상시에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절망감을 경험하였으며, 15.8%는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며, 5.4%는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세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는 “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정의)에 의하면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¹²⁾ 충격적 사건(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재해·전쟁, 도파·회피가 불가능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및 폭력, 자살, 고문, 테러 등)의 경험 후 심리적 불안을 겪는 것

¹³⁾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인증(depersionalization,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자신과 분리된 느낌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 지각에 이상이 생긴 상태이며, 인격상실, 신체감각 상실, 현실감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남), 사회공포증,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조울증, 불면증, 해리장애(정상적으로 통합되어 야 하는 성격요소(의식, 기억, 정서감, 지각 등)들이 붕괴되는 장애), 과각성(과민반응) 충동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 등

¹⁴⁾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

¹⁵⁾ 전국 청소년 9세에서 24세까지 89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위기에 처해 있는 고위험군의 청소년이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조례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반복된 문구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여 조례입안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식명칭을 사용하여 명확히 표현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제6조제1항 중 “위하여” 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로, “지원협의회” 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을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로 한다.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95
----------	-----

제안 연월일: 2021년 10월 15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반복된 문구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여 조례입안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식명칭을 사용하여 명확히 표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제1항 중 “위하여” 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로, “지원협의회” 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을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로 한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지원협의회”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협회의회의 운영) ①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회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회의회의 운영) ① ---- ----- ----- ----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협회의회(이하 “협회의회” 라 한다)----- -.
② 협회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 -----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내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매년 성북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등 긴급지원
3. 외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
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